**Yourssu 회칙**

**대한민국 숭실대학교 유어슈 동아리 회칙[제정 2021.1.19 회칙 제00006호]**

**전문(前文)**

숭실대학교 학생들 간에 온라인 공론의 공간이 없어 원활한 소통이 되지 않고 있는 점을 안타까이 여긴 애교심 많은 학생들에 의해 유어슈가 만들어졌다. 이에 그 설립 취지를 이어가며 보다 발전된 미래를 위해 체계적인 모임을 만들고, 설립 회원들의 중지를 모아 다음과 같이 회칙을 제정한다.

2010년 1월 15일

**제1장 총칙**

제1조〔명칭〕 이 모임은 'YOURSSU' 동아리이며 한글 표기는 ‘유어슈'라 한다.

제2조〔정의〕 회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준회원"은

2. "정회원"은

3. “활동회원"은 정회원 중

4. “비활동회원"은

5. “파트 리더”

6. “리더“ 는 회장, 부회장, 개발팀장, 운영팀장, 디자인팀장 어쩌구

5. “졸업자”는 유어슈의 운영진 권한을 가진 채 숭실대학교를 졸업한 회원을 말한다.

제3조〔목적〕 '당신의 숭실 커뮤니티 유어슈'은 숭실대 구성원에게 공론의 공간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자격〕유어슈의 정회원은 숭실대 학생, 동문으로 한다.

**제2장 회원**

제6조〔운영진 가입〕

① 숭실대 학부생이 유어슈 동아리의 목적에 뜻을 같이하여 가입 신청하면 가입 절차를 거친 후 운영진이 된다.

② 가입절차는 세칙으로 정한다.

제7조〔권리〕 활동 회원은 다음과 같은 권리를 가진다.

① 유어슈 동아리의 운영과 의사 결정에 참여할 권리

② 유어슈 동아리의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행사할 권리

제8조〔의무〕 정회원은 다음과 같은 의무를 가진다.

① 유어슈 동아리의 회칙을 지킬 의무

② 유어슈 동아리의 목적 실현을 위한 사업과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의무

③ 회비가 있을 경우 납부할 의무

④ 가입 직후 최소 2학기 활동 회원으로 활동을 해야 한다

⑤ 비활동 기간은 연속 2학기로 제한한다. (단, 군복무와 교환학생 기간은 제외한다.)

⑥ 유어슈 총회에 참석할 의무가 있다. (단, 불가피하게 참석하지 못할 경우 위임장 혹은 해당년도 총회 의결권 포기각서 제출로 대체한다.)

제9조〔자격 상실〕 회원으로서 의무를 다하지 않거나 유어슈 동아리의 명예를 실추시키거나 활동에 지장을 준 회원에 대해서는 세칙에 정한 절차에 따라 정회원 자격을 박탈할 수 있다.

제10조〔탈퇴〕 유어슈 동아리의 탈퇴를 원하는 회원은 세칙에 따라 탈퇴할 수 있다.

**제3장 책임 리더 회의**

제17조〔지위〕

책임 리더 회의는 조직, 운영, 사업과 활동에 관한 중요한 사항들을 토의하고 의결하는 기구이다.

제18조〔구성〕

① 책임 리더 회의는 책임 리더들로 구성한다.

제19조〔의장〕 운영위원회 의장은 회장이 한다.

제20조〔기능 및 권한〕

① 운영 전반에 관한 보고와 주요 사업에 대해 의결

② 세칙의 제·개정

③ 특별기구 등의 설치.해산 의결

④ 회의진행은 의사진행세칙에 따른다.

⑤ 사업 및 예산을 집행한다.

⑥ 사업 보고 및 결산을 한다.

⑦ 활동 및 사업 전반을 기록·보관 한다.

⑧ 회장 및 부회장의 선거를 진행한다.

⑨ 기타 총회가 위임한 사항을 진행한다.

⑩ 회원의 포상, 징계 및 복권을 결정할 수 있다.

제21조〔소집〕

① 정기 운영위원회는 학기 중에 격주 1회로 한다. 단, 상황에 따라 연기할 수 있다.

② 책임 리더 회의는 학기마다 1회 이상 중간 결산을 실시한다.

③ 임시 책임 리더 회의는 긴급을 요할 때 의장이 소집한다.

제22조〔의결〕

책임 리더 회의의 의결은 책임리더 전체 인원 출석과 출석인원 2/3의 찬성으로 한다.

**제4장 총회**

제11조〔지위〕 총회는 유어슈 동아리의 최고 의사결정기구이다.

제12조〔구성〕 총회는 유어슈 동아리의 “정회원”으로 구성된다.

제13조〔의장〕 의장은 회장이 한다. 단, 의장 불신임의 총회 시 의장은 책임 리더 중에서 위임을 받은 자가 한다.

제14조〔기능 및 권한〕

① 총회는 유어슈 동아리의 운영진 전체에게 관련된 중대한 사항을 토의하고 결정한다.

② 총회는 책임 리더가 회칙을 위배하였거나 업무수행 상 부당한 행위를 하였을 때는 탄핵을 할 수 있다.

③ 총회에서는 다음의 사항들을 결정한다.

1) 회칙의 개정

4) 기타

④ 정기 총회에서는 다음의 사항들을 결정한다.

1) 회장의 추인

2) 결산, 예산과 사업 계획의 승인

⑤ 총회에서는 책임 리더 회의가 가진 모든 기능 및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제15조〔소집〕

① 정기 총회는 년 1회로 회계년도 마감 후 한다.

② 전체 활동 멤버 3/4 이상의 동의 아래 임의로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③ 회장과 책임 리더들의 합의 하에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제16조〔의결〕

① 총회의 의결은 출석 인원 3/4 찬성과 책임리더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회장ㆍ부회장의 불신임 결정에 관한 총회는 의장의 진행 아래, 출석 인원 3/4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5장 회장, 부회장**

제23조〔지위〕

① 회장, 부회장은 의사결정 및 집행을 총괄하고 대내외적으로 본회의 대표기관이다.

② 부회장은 회장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권한을 대행하는 대표기관이다.

3. 회장, 부회장은 연임할 수 있다.

4. 회장, 부회장의 신임은 전대 회장, 부회장의 임명 또는 총회의 의결에 의해 결정할 수 있다.

제24조〔임기〕 회장ㆍ부회장의 임기는 총회에서 선출해 차기년도 총회까지로 한다.

제25조〔기능 및 권한〕

① 회장은 동아리를 대표하여 총회, 운영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② 회장은 예.결산의 집행, 운영위원회의 각 팀장을 팀원들의 과반수 이상 동의를 얻은 후 임명 및 파면을 할 수 있다.

③ 회장은 기타 동아리의 직무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

④ 부회장은 회장이 위임한 사항을 독자적으로 집행할 수 있다.

**제6장 졸업자**

제27조(지위)

① 졸업자 중 책임 리더의 요청으로 인해 활동을 할 경우, 이 사람은 정회원로 칭한다.

제28조(기능 및 권한)

① 회원의 교육을 할 수 있다.

② 서비스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 단, 서비스의 방향에 대해서는 결정할 수 없다.

③ 졸업자는 총회에서 의견을 상정할 수 있다. 단, 총회 1주일 이전에 회장 또는 부회장에게 사전 고지할 의무가 있다.

**제7장 투표**

제29조〔투표〕 전체 회원의 중대 사항을 투표로 결정할 수 있다.

제30조〔투표의 방법〕

투표는 본 회의 운영진 과반수의 투표로 성사되고,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장 재정**

제35조〔재정〕

유어슈 동아리의 재정은 운영진의 회비와 후원금, 그리고 재정사업 수익금으로 한다.

제36조〔원칙〕

유어슈 동아리의 재정은 분기마다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제37조〔회계년도〕

사업연도와 회계년도는 1월 1일부터 같은 해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38조〔회계감사〕

회계는 회계세칙에 따라 진행한다.

**제10장 포상·징계·복권**

제39조〔포상〕

유어슈 동아리 목적과 사업에 모범을 보인 회원이나 조직은 세칙에 의해 포상할 수 있다.

제40조〔징계〕

1. 유어슈 동아리 목적과 사업에 해를 끼치는 행위를 하거나 허위 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실추시킨 회원은 책임 리더 회의의 의결로 징계할 수 있다.
2. 유어슈의 가치를 훼손하는 행위를 한 회원은 책임 리더 회의의 의결로 징계할 수 있다.

제41조〔복권〕

징계된 회원은 세칙이 정한 절차에 의해 책임 리더 회의의 의결로 복권 될 수 있다.

**제11장 보칙**

제42조〔준용 규정〕회칙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민주주의 일반 원칙과 세칙에 따른다.

**부칙 <제3호 2016.01.16>**

이 회칙은 2016년 01월 16일 정기 총회에서 통과되는 즉시 효력을 발생한다.

**유어슈 동아리 운영진 가입 및 탈퇴에 관한 세칙**

**[제정 2016.01.16 세칙 제00003호]**

**제1조 유어슈 동아리의 운영진 가입 및 탈퇴에 관한 세칙이다.**

**① 가입**

1. 운영진 가입은 회칙에 정한 유어슈 동아리의 목적, 권리, 의무에 동의하는 숭실대 학부생으로 한다.
2. 운영진 가입절차는 가입신청서를 받아 1차 서류심사, 2차 면접을 통한다.
3. 4주 이상의 수습기간을 두어 운영위원회의 회의를 통해 최종 선발한다.

**② 탈퇴**

1. 운영진이 기타 개인적인 사유로 인해 동아리 활동을 계속 할 수 없을 경우, 탈퇴를 요청할 수 있으며, 다음 절차를 통해 탈퇴 할 수 있다.
2. 회장 혹은 부회장에게 탈퇴사유를 밝힌다.
3. 담당업무를 다른 운영진에게 인수인계 후 최종 승인을 받는다.
4. 탈퇴 요청 시 최소 2주 전에 탈퇴를 요청해야 하며, 위의 과정을 거치지 않고 탈퇴 시 재 가입 할 수 없다.

**부칙 <제1호 2016.01.16>**

이 세칙은 2016년 01월 16일 총회에서 통과되는 즉시 효력을 발생한다.

**유어슈 동아리 운영진 회비에 관한 세칙**

**[제정 2016.01.16 세칙 제00003호]**

**제1조 유어슈 동아리의 운영진 회비에 관한 세칙이다**.

**① 회비**

1. 운영위원회의 자율재량으로 시행할 수 있다.

**부칙 <제2호 2016.01.16>**

이 세칙은 2016년 01월 16일 총회에서 통과되는 즉시 효력을 발생한다.

**포상·징계·복권에 관한 세칙**

**[제정 2016.01.16 세칙 제00003호]**

**제1조 포상**

① 동아리의 위상을 높이거나, 알리는데 큰 공헌을 한 운영진에게는 운영위원회의 의견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2조. 징계**

**① 운영진이 동아리 명예를 훼손시킬경우 책임의 경중에 따라 운영위원회의 경고조치를 받을 수 있다.**

**② 운영진이 한 학기 동안 3회의 경고를 받을 경우 제명된다. 단, 임원진과의 면담을 통해 소명할 수 있다.**

**③ 경고는 지각3회 당 1회에 해당한다.**

**④ 전체 해당 사항**

1. 정해진 스케쥴(이미 수집한 스케쥴) 외의 이유로 전체 회의에 불참한 경우에 1회씩 경고 부여
2. 30분 단위로 시간 재조사(기본적으로 공강시간을 따르며, 공강시간임에도 불구하고 참여하지 못하는 경우 합당한 사유 제출. 방학의 경우 시작 첫주에 시간 조사)
3. 합당한 사유는 근로 및 아르바이트에 한한다.
4. 이외 주기적인 불참이 아닌 돌발적인 불참일 경우 인정하는 사유를 다음으로 제한한다.
5. 가족 및 친척의 경조사
6. 학교 수업의 보충수업
7. 당일 시험 시간이 회의 이후 또는 이틀 이내에다음날이 시험인 경우

5) 보충수업이나 시험이 있는 경우 캘린더 등록기간 중 사유를 회장 또는 부회장에게 알려야 한다. 캘린더 등록기간 중 사유 미 제출시 다음과 같이 경고를 부여한다.  
 1. 캘린더 등록기간 초과 후 회의 전날 자정까지 제출시 지각 1회  
 2. 회의 전날 이후 제출 또는 무단 불참시 경고 1회

6) 합당한 사유 또는 인정되지 않는 사유로 불참할 경우, 회의록을 읽고 본인이 완전히 이해한 내용을 회의 4일 뒤 24시까지 회의록 밑에 적어야 한다. (월요일 회의 시 금요일 24시까지) 올리지 않는 경우 합당한 사유로 불참하더라도 다음과 같이 경고 부여한다.

**1. 4일 뒤 까지 미제출시 지각 1회**

**2. 다음 회의까지 미제출시 경고 1회**

**3. 합당한 사유 아닌 일로 불참해 이미 경고를 부여 받았더라도 기간 내 미 제출시 위와 같이 추가 경고를 부여한다.**

7) 허용되지 않는 사유라도 급한 경우 전체 회의 1시간 참여할 경우에는 참여 인정한다. (지각 또는 늦은 참석인 경우 참석 기준시간부터 1시간이다.) 단, 회의 떠나고 나서 결정된 사안에 회의록을 읽고 이해한 내용을 4일 후까지 회의록 밑에 적어야 한다. 정해진 시간까지 회의록 밑에 이해한 내용을 적지 않을 경우 ④-6)에 따라 경고를 부여한다. 여기서 허용되지 않는 사유지만 1시간 참여 후 수 있는 사안은 다음과 같다.

1. 제출기한이 당일 회의시간 이후 또는 다음날까지인 과제 또는 발표가 있는 경우 (팀프로젝트 포함)   
   팀프로젝트 모임이 회의일이라고 해서 허용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제출일 또는 발표일이 당일 또는 다음날인 경우에 한해 허용합니다.
2. 아픈 경우

8) 지각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해당된다. 지각기준 : 정시에 회의가 시작되며 본인이 참석이 가능하다고 명시한 시간 이후로 오면 지각이 된다. (30분 이내 지각의 경우 지각 1회, 30분 이상의 지각의 경우 지각 2회 부여하며, 회의가 끝나고 도착시 지각이 아닌 경고로 처리한다.)

1. 지각할 경우 회의록을 보고 지각 한 부분까지의 자신의 회의록 이해 내용을 회의록 밑에 적는다. 정해진 시간까지 회의록 밑에 이해한 내용을 적지 않을 경우 ④-6)에 따라 페널티를 부여한다. (단, 회의 진행이 거의 없었을 정도로 매우 미미할 경우 회의록 작성은 면제된다.)

9) 아픈 경우를 사유로 결석할 경우 지각 1회로 카운트 된다. 단 진료의뢰서, 유고결석계, 처방전 사진 등 자신의 질병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자료 제출 시 지각이 부여되지 않는다.

10) 악용방지를 위해 허위사유 제출 적발 시 즉시 제명됩니다.

11) 간단한 업무 의결 사항일 경우 최소 24시간 이상(상황의 여유에 따라 24시간 이상 주어질 수 있음) 주어졌을 때 기간 내에 답변을 하지 않을 시 다음에 따라 경고를 부여한다.   
 a) 24시간 경과 후 12시간 이내 지각 1회 부여  
 b) 24시간 경과 후 12이후 이내 지각 2회 부여  
 c) 미이행시 경고 1회  
단 급하게 협조를 요청해야 할 경우 24시간이 주어지지 않을 수 있는데 이 경우에는 불이행자에게 경고가 부여되지 않는다. 부득이한 사정으로 24시간 안에 이행하지 못할 것 같은 상황에 놓일 경우 임원진에 미리 사유 제출 시 면제된다.

⑤ 각 팀별 해당사항

1. 기획팀
2. 기획 회의는 전체 사항과 동일하게 적용한다.
3. 개발팀
4. 개발팀장은 업무를 팀원에게 할당하고 확인한다.
5. 업무의 처리 마감 기한은 개발팀장과 팀원이 상의해서 개발팀장의 재량으로 정한다.
6. 업무 처리를 기간 내에 미이행시 다음과 같이 경고를 부여한다.  
    a) 24시간 이내 지각 1회 부여  
    b) 24시간 경과 후 48시간 이내 지각 2회 부여   
    c) 일정 기간 이상으로 연체되어 더 이상 업무가 진행이 어려울 경우 경고 1회
7. 개발팀장은 재량에 따라 위 사항을 적용하여 회장 또는 부회장에게 보고할 수 있다.
8. 기타 사항은 전체 사항과 동일하게 적용한다.
9. 디자인팀
10. 디자인 팀장은 업무를 할당하고 확인한다.
11. 업무의 처리 마감 기한은 디자인팀장과 팀원이 상의해서 디자인팀장의 재량으로 정한다.
12. 업무 처리를 기간 내에 미이행시 다음과 같이 경고를 부여한다.  
     a) 24시간 이내 지각 1회 부여  
     b) 24시간 경과 후 48시간 이내 지각 2회 부여   
     c) 일정 기간 이상으로 연체되어 더 이상 업무가 진행이 어려울 경우 경고 1회
13. 디자인 팀장은 재량에 따라 위 사항을 적용하여 회장 또는 부회장에게 보고할 수 있다.
14. 기타 사항은 전체 사항과 동일하게 적용한다.

* 위 사항은 운영위원회 구성원들에게만 적용되며, 이전 동아리 활동에 기여한 비활동 인원, 또는 4학년에 대해서는 적용이 제외됩니다.

**3. 복권**

경고 3회로 인해 운영진에서 탈퇴 또는 강등된 운영진이 복권을 요청하거나, 다른 운영진에 의해 복권이 요청된 경우 운영위원회의 회의를 통해 복권 될 수 있다.

**부칙 <제3호 2016.01.16>**

이 세칙은 2016년 01월 16일 총회에서 통과되는 즉시 효력을 발생한다.

**유어슈 동아리 회계세칙**

**[제정 2021.09.00 세칙 제00003호]**

**제1조 중간 결산**

① 중간 결산은 운영위원회에 의해 시행된다.

② 운영위원회는 학기마다 1회 이상 중간 결산을 실시한다.

③ 회계 담당자는 결산안을 작성하여 제출 하여야 한다.

④ 그 이외의 결산 방식은 제3조에 따른다.

**제2조 결산 방식**

① 회계는 관항목에 따라 결산안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회계는 월별 결산안을 작성할 의무가 있다.

⑤ 회계와 임원진은 회계 년도 이후 회계 마감 및 예결산안을 작성하여야 한다.

**부칙 <제5호 2021.00.0>**

이 세칙은 2021년 00월 00일 총회에서 통과되는 즉시 효력을 발생한다.